「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○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
O 제안일자 : 2024. 5. 13.

○ 회부일자 : 2024. 5. 17.

O 상정일자 : 2024. 5. 17.

2. 제안이유

○ 우리 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O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(안 제5조)
- 지원사업 운영 위탁(안 제6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○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서 '지방자 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'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○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농 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4조(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)에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<u>5년마다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</u> 도록 함.
- 안 제5조(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)에서는 <u>관내 스마트농업 육</u> 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추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가능할 수 있게 함.

<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> ---

- 1.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・개발 및 보급
- 2.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컨설팅
- 3.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
- 4.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조성ㆍ설치ㆍ운영ㆍ시설 지원
- 5.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
- 6. 스마트팜 지원
- 7.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5. 종합검토의견

○ 관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입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.